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1. 9. 3.

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 
설치 및 운영 조례안  
(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)



**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설치 및  
운영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12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8. 24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8. 24.

## 2. 제안이유

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찾아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법률, 법무, 세무, 무역, 경영, 노무 등 전문분야에서 금천구민이 비용 부담 없이 상담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1) 전문가 무료상담실 명칭 및 설치장소(안 제2조 및 제4조)
- 2) 상담분야(안 제5조)
  - 법률, 법무에 관한 사항
  - 세무에 관한 사항

- 노무, 무역, 경영에 관한 사항
- 그밖에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

### 3) 상담방법(안 제7조)

-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, 전화·서면 등 비대면 상담도 병행

### 4) 상담관의 자격(안 제8조)

- 법률·법무분야 : 변호사, 법무사, 법학교수 등
- 세무분야 : 회계사, 세무사 등
- 노무·무역·경영분야 : 노무사, 경영지도사 등

### 5) 상담처리(안 제10조)

- 상담은 가능하면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내용은 서면, 이메일 또는 전화로 회신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

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제4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전문가 무료상담실이 제도적 근거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

○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상담 장소는 금천구청 청사 내 설치 및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사항, 안 제5조의 상담분야를 법률 외 세무, 노무, 무역, 경영 그 밖에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금천구민, 관내기관, 기업종사자, 금천구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,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을, 안 제7조에서는 상담방법 및 상담일 등을 규정하고,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상담관의 자격 및 비밀엄수의 의무와 상담처리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.

○ 제정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「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상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, 우리구 주민의 권익 보호 및 구제 강화를 위해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적법 타당하며 상담범위를 보다 다양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할 것 이라고 사료됨

붙 임 : 1. 관계법령 1부.

## 관계법령

###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

제12조(민원실의 설치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.

###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9조(민원실) ① 민원실의 장은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확인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.

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관계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 12. 31.>

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용지·필기구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시설·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